

제주지방법원 2023. 5. 1 선고 2022나137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제주지방법원 2023. 5. 1 선고 2022나13742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가단6280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3. 4. 3.

판결선고 2023. 5. 1.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가단6280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제1심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21. 3. 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선옥, 판사 황방모, 판사 이황선